

徵發財產整理에 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
(유동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0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6. 26.

발의자 : 유동수 · 송옥주 · 신창현

윤후덕 · 윤관석 · 손혜원

이찬열 · 박주민 · 이동섭

안규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의 제명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데다가 한자로 되어 있어,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움.
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명).

법률 제 호

徵發財產整理에 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

徵發財產整理에 관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徵發財產整理에 관한特別措置法”을 “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徵發財產整理에 관한特別措置法</u>	<u>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</u>